

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125505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상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천, 김주영

변론 종결2023. 1. 18.

판결 선고2023. 2. 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3,857,500원, 피고 C은 55,90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22. 7. 15.부터, 피고 C은 2022.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단지에 있는 E 등 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출자하여 만든 투자회사(벤처캐피탈)로서 주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과학기술기업의 창업지원이나 우수기술의 사업화지원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이다.

2) F 및 피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10만주 중 F은 5만 주, 피고 B는 3만 주, 피고 C은 2만 주를 보유한 주주 겸 사내이사이다.

나. 투자계약 체결 및 자금 납입

1) 치과의사인 F과 CAD 개발자인 피고들은 치아 투명교정기 등 치과분야 사업을 하기 위해 2017. 11. 24. G회사를 창업하여 F은 대표이사를, 피고들은 각 사내이사를 맡고 원고에게 자금투자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31. G회사와 G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25,000주를 1주당 8,000원씩 총 2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 및 피고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주식매수청구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원고

피투자기업: G회사

이해관계인: F 및 피고들

별지4 <특약사항>

제5조의4(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의해 보유하는 피투자기업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매수청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주금납입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2년 이내로 조정한다.

1. 2021년 기말 결산 재무제표상 연매출이 2,000백만 원 미만인 경우

(매수청구기간: 2022. 4. 1.~2022. 12. 31.)

2. 2022년 기말 결산 재무제표상 연매출이 3,000백만 원 미만인 경우

(매수청구기간: 2023. 4. 1.~2023. 12. 31.)

③ 본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의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에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15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에 있어 매매가격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본조 제3항에 의한 매매 이행일까지 연복리 8%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피투자기업의 합병, 분할, 주식의 액면분할, 무상증자로 인해 주당 취득단가가 변동될 경우 그 변동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복리 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원고는 주금납입기일인 2017. 12. 22. G회사에 주식인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원고는 2022. 4. 28. F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 별지4 특약사항 제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F 및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 아래 -

○ A 상환전환우선주 보유주식수 : 25,000주

○ 주식매수청구금액 : 279,525,000원(= 25,000주 × 11,181원)

연복리 8% 및 경과일수 1,588일(2017. 12. 22.~2022. 4. 28.) 적용 시 매수청구 가능 금액은 279,541,457원이며, 동 금액에 가장 가까운 주당 매수청구가액은 11,181원임

○ 이해관계인별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및 매매금액 (이해관계인 보유주식수 비율에 따름)

F	50,000주	12,500주	139,762,500원
B	30,000주	7,500주	83,857,500원
C	20,000주	5,000주	55,905,000원
합계	100,000주	25,000주	279,525,000원

○ 주식매매대금 입금기한 : 동 주식매수청구 공문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주식매매대금 입금 완료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투자계약 별지4 특약사항 제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해 보유하는 G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식매매대금의 액수

원고와 피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액수를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위 특약사항 제5조의4 제3항에 의한 매매 이행일까지 연복리 8%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액수는 280,626,007원{= 투자원금(인수가격) 2억 원 $\times$ (1 + 0.08) $\times$ (1 + 0.08 $\times$
143일1)/365일),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79,525,000원이다.

원고가 매수청구한 주식 25,000주는 F 및 피고들의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매수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83,857,500원(= 279,525,000원 $\times$ 3/10), 피고 C은
55,905,000원(= 279,525,000원 $\times$ 2/1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입금기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22. 7. 15.부터, 피고 C은 2022.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투자계약 별지4 특약사항 제5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주식매수청구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고, 원고가 투자한 원금에 연복리 8%의 고율의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투자기업인 G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 할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점(이 사건 투자계약 제7조)과 비교하면 위 특약사항 제5조의4 제1항 및 제4항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할 당시 피고들이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상태 또는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불공정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준호

1) 2021. 12. 22.부터 주식매매대금 입금기한인 주식매수청구 서면의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2. 5. 13.까지의 일수